

【별표 1】

실내공기질 유지기준(제7조 관련)

오염물질 항목 병영생활에 필요한 시설	미세 먼지 (PM-10) (μ g/m ³)	초미세 먼지 (PM-2.5) (μ g/m ³)	이산화 탄소 (ppm)	폼알데 하이드 (μ g/m ³)	총부유 세균 (CFU/m ³)	일산화 탄소 (ppm)
1. 지휘통제실, 문서고, 사격지휘 소, 작전지휘시설 등 모든 지하 작전시설 2. 비무장지대에 위치한 자연환기 가 제한되는 소초의 지하생활관 3. 「도서관법」 제2조제1호에 따 른 도서관 중 연면적 3000 m ² 이 상인 도서관 4.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중 연 면적 3000 m ² 이상인 박물관 5.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제3 호에 따른 대규모점포(쇼핑센터, 복지회관 등) 6. 연면적 1000 m ² 이상인 학교· 교육시설의 교실·강의장 7. 「전시산업발전법」 제2조제4 호에 따른 전시시설 중 연면적 2000 m ² 이상인 전시시설	100 이하	50 이하	1000 이하	100 이하	-	10 이하
8.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연면적 2000 m ² 이 상이거나 병상수가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9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제3호 에 따른 어린이집 중 연면적 430 m ² 이상인 어린이집	75 이하	35 이하		80 이하	800 이하	
10. 실내주차장(기계식 주차장은 제외한다)	200 이하	-		100 이하	-	
11. 연면적 2000 m ² 이상인 업무시 설, 식당, 병영생활시설(행정업 무 통합시설을 포함한다) 12. 「공연법」 제2조제4호에 따 른 공연장 중 객석수가 1천석 이상인 실내 공연장·강당	200 이하	-	-	-	-	-
비고						
1. 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 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준을 1500 ppm 이하로 한다.						
2. 제11호 중 연면적 2000 m ² 이상인 업무시설, 제12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둘 이상의						

용도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실내 미세먼지(PM-10)의 농도가 $200 \mu\text{g}/\text{m}^3$ 에 근접하여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실내공기정화시설(덕트) 및 설비를 교체 또는 청소해야 한다.

가. 공기정화기와 이에 연결된 급·배기관(급·배기구를 포함한다)

나. 중앙집중식 냉·난방시설의 급·배기구

다. 실내공기의 단순배기관

라. 화장실용 배기관

마. 조리용 배기관